

금연

No Smoking Area



유치원·어린이집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

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**30m 이내** 에서
흡연 시 **10만원** 의 과태료 부과

금연

No Smoking Area



초·중·고등학교 시설 **금연구역**

☞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**30m 이내** 에서
흡연 시 **10만원** 의 과태료 부과

☞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**50m 이내**
흡연시 **5만원** 의 과태료 부과 (절대보호구역)
(단, 경계선으로부터 **30m 이내**는 **10만원**의 과태료 부과)